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73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어린이 실내 놀이터 설치와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실내 놀이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을 무상 제공할 시 수탁자를 수의계약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유휴 공간 발굴 및 운영 주체의 적극적인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실내 놀이터 휴관일을 추가 명시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휴일(어린이날 제외) 및 근로자의 날 등 휴관일을 추가 명시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안 제5조)

- 공간 무상 제공 시 지정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무상사용의 경우 해당 수탁자에 한해 위탁 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함(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한시적 경비 보조금 시비 4.6억원 반영되었음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5. 6. 20. ~ 2025. 7. 10.) 중 특기사항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현행 유지 의견이 있어 반영함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안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 제공한 자에 대한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먼저 개정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 방식의 선택은 보통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게 됨.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 개정 범위(아래 표 참고)가 현행

조례(현행 조례 총 17개 조문, 3개 별표) 전부에 해당하고, 단순 문구 수정 외에도 조문 삭제 및 신설, 재배치 등 개정 사항이 상당함에도 “일부개정” 방식으로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경우 자치법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기존 자치법규의 용어와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 건은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자치법규 입안 시 개정 방식 선택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문구 수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일부 용어의 정의 삭제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및 기능)	- 제3조 및 제4조 통합 규정
제4조(기능)	삭제	- 제4조 삭제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 휴관일 정비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 조 제목 등 용어 변경, 운영시간(10시->9시) 변경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 문구 수정 및 일부 항 삭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 문구 수정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 문구 수정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 문구 수정
제11조(운영자의 의무)	제11조(유지관리 의무)	- 조 제목 변경, 문구 정비, 항 삭제 및 재배치
제12조(수탁자 자격 및 선정)	제12조(위탁 등)	- 조 제목 변경, 항 신설 등 조문 전반적 수정 - 지정위탁 근거 마련
제13조(위탁계약)	제13조(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	- 지정위탁 근거 마련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 시정조치 이행 의무 문구 신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조 신설(현행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내용 유사)
제15조(위탁의 해지)	제16조(위탁의 해지)	- 조문 순서 변경, 문구 수정
	제17조(재계약)	- 조 신설
제16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	- 조문 순서 변경, 문구 수정
제17조(시행규칙)		- 삭제
별표 1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별표 1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 공공형 실내놀이터 추가
별표 2 이용료 징수 기준	별표 2 이용료 징수 기준	- 이용료 징수 기준 추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	- 다문화가족 감면대상 추가

II.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문구를 변경하려는 것임. 그런데 아래 입안 기준 등에서도 알 수 있듯 목적 규정을 “ ~~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는 것은 입안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는바 개정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목적 규정 표현 방식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위하여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자치조례의 목적 규정 표현 방식

“…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위하여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목적 규정 작성례

제○조(목적) 이 법은 ~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에 ~하는 것을/이바지하는 것을/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거나 조례에서 반복 사용하지 않는 용어(제3호 “이용료”, 제5호 “유지관리”)와 개정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제4호 “관리주체”)를 삭제한 것임.
- 안 제3조(설치 및 기능)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설치 등) 및 제4조(기능)를 통합하여 한 조에서 규정한 것이며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4조는 삭제함.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관계 법률을 인용하여 공휴일(어린이날 제외)과 근로자의 날을 휴관일로 명확히 하였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휴관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의 범위가 확대되게 됨*.

* 현행(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 3·1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기독교탄
신일 등 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확대

또한 개정안에서는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규정하던 것을 구청장이 시설별 여건
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민이 정기휴관일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 으로 한다.</p> <p>1.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 휴</p> <p>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 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p> <p>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 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p>	<p>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 구청장이 시설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기 휴관일</p> <p>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휴일. 다만, 어린이날은 제외한다.</p> <p>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 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안 제6조(운영시간 등)에서는 놀이터 운영 시작 시간을 “10시 → 9시” 로 확대
하고, 조 제목을 “(이용시간 등) → (운영시간 등)” 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문구
를 수정하였는데, 현재 운영 중인 실내 놀이터 이용시간과 연계하여 사유 설명
이 필요해 보임.

<p>[이용시간]</p> <p>○ 도곡·세곡·일원 어린이실내놀이터: 10:00 ~ 18:00</p> <p>○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 1동점: 평일 09:30 ~ 11:30/주말 09:00 ~ 17:50</p>

(자료: 강남구청 및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관련 조례 작성례에서 “이용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 보다는 “이용”이라는 용어가 이용자 중심 표현이라 사료 되는데, 용어 변경 필요성과 실익에 대한 부서 설명을 거쳐 현행 조례상의 표현인 “이용시간” 으로의 수정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다음 각 호” 로 문구를 변경하였는데,

“다음 각 호” 로 규정할 경우 각 호의 열거된 요건을 두루 갖춰야 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규정의 취지가 각 호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음.

안 제8조 및 제9조의 입법 취지를 볼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표현하는 것이 해석상 명확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 논의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u> 입장을 제한하거나 <u>퇴장 시킬 수</u> 있다.</p> <p>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p> <p>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p> <p>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p> <p>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p> <p>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p>	<p>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u>구청장은</u> 다음 ----- <u>사람에 대하여</u> ----- <u>퇴장시</u> <u>킬</u> -----.</p> <p>1.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 나 퇴장 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 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 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p>제9조(행위의 제한) ----- ---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 ----- 퇴장시킬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이용이 허가되지 ----- 4.·5. (현행과 같음)

○ 안 제10조(이용자의 의무)에서는 조를 전부 개정하면서 제1항에 “놀이터를 이
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함.

- 그런데, 현행 조례 제8조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등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자 동반 원칙 및 동
반 예외(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제2항의 시설 운영규
정 준수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설명 요구됨. 덧붙여 안 별표 2에서도 보호자
동반 원칙 및 동반 예외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제1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p>	<p>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 사람에 대하여 ----- 퇴장시</p>

현 행	개 정 안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약취·형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 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p>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p> <p>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징수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표 생략)</p> <p>※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p>	<p>킬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p>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다.</p> <p>②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p> <p>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징수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표 생략)</p> <p>※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p> <p>※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감면불가)이 추가되며, 신청아동의 경우 단독 입장 가능하다.</p>

□ 공공형 실내 놀이터 지정 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안 제12조(위탁 등) 및 제13조(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민간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수탁자로 지정위탁하고, 그 위탁기간은 무상 사용기간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의 놀이권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실내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인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위탁을 위해서는 자치구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종교시설 내 유희부지 무상 제공을 통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래 표 참고), 적극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에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남성은교회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조성 개요]

○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조성

- 조성위치 : 대치동 645, 강남성은교회 2층(226.8㎡)
- 사업내용 : 민간 유희공간을 발굴하여 아동 누구나 환경적 제약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공간 확충
- 추진일정
 - 2025. 1. ~ 6. : 추진계획 수립, 설계용역 및 현장컨설팅, 위험가치평가 실시
 - 2025. 8. ~ 10. : 착공 및 준공,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실시(예정)
 - 2025. 11. :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대치1동점 개소 및 운영(예정)
- 소요예산 : 453,600천원(시비 100%)
- 운영개요(안)

- 이용대상 : 6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화 ~ 일 09:00 ~ 18:00 (월요일 휴무)
- 이용정원 : 회차별 44명(보호자 포함)
- 이용금액 : 1인 3,000원

○ 지정위탁 근거 조례 명시 자치구 현황(9)

-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자료: 보육지원과)

○ 어린이 놀이공간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구민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 현실상 적절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접근성 좋은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민간 시설의 유희공간 활용을 유도함은 물론 책임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인정된다 사료됨.

향후 이를 근거로 지정 위탁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제1항단서의 규정을 유념하여 운영 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

□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 안 별표 1(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개정 사항은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것임.

○ 안 별표 2(이용료 징수 기준)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를 신설한 것으로 (영유아 3천원, 보호자 무료), 관련하여 기존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영유아 1천원, 보호자 1천원)와의 이용료 차이에 대한 부서 설명 요구됨.

○ 안 별표3(이용료의 감면 기준)에서는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족(제14호)을 추가한 것임.

○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한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어린이회관 조례” 라 함)에 따른 “놀이실”의 이용료 및 감면 규정과의 관계,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 1동점”의 운영 사항(단체 이용 시 할인 여부)을 연계한 부서 설명이 요구됨.

서울형 키즈카페(개정안)	놀이실(어린이회관 조례)
- 이용료 3,000원	- 이용료 3,000원 이하
- <u>20명</u> 이상 단체: 50% 감면	- <u>10명</u> 이상 단체: 1,500원 이하

즉, 개정안에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추가한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 1동점”은 어린이회관 내 위치한 시설로 어린이회관 홈페이지에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회관 조례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놀이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은 두고 있는데, 어린이회관 조례에 따른 “놀이실”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어린이회관 조례에 따른 단체 감면 기준이 상이하여 구민에게 혼선을 줄 여지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의 단체 감면 기준을 “20명 →10명”으로 수정하여 어린이회관 조례와 통일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 밖의 일부 조문의 경우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개관 및 휴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강남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Ⅲ.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 취지는 계절과 날씨 등 환경적 요인에 상관없이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내 민간시설의 유휴공간 활용을 유도하고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한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지정위탁에 관한 사항이나 휴관일,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개정안 전반적으로 개정 실익이나 필요성이 미미한 단순 문구 수정, 조문 통합 및 재배치 등 형식적인 개정 사항이 상당함. 그런데 “일부개정”의 경우 자치법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한 기존 자치법규의 용어와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개정은 자치법규의 체계와 연혁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했더라면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는게 타당했을 것임.
- 즉, 전반적으로 입안 과정에서 입법 형식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자치법규 입안에 있어 신중하고 충분한 입법 계획과 정보 수집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73호

제안일자 : 2025.8.29.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조문 내용 수정 및 정비 (안 제5조제2항)
-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상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안 제8조, 안 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전단 중 “있고,”를 “있다.”로 한다.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위”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제5조(개관 및 휴관) 다</u> <u>음 각 호의 휴관일을</u> <u>제외하고는 매일 개관</u> <u>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u>1. 1월 1일, 5월 1일,</u> <u>설날 및 추석 연휴</u></p> <p><u>2. 매주 월요일. 다만,</u> <u>월요일이 공휴일인</u> <u>경우는 그 다음날로</u> <u>한다.</u></p> <p><u>3. 구청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임시휴</u> <u>관일. 이 경우 7일 전</u> <u>까지 휴관일시와 사</u> <u>유를 구청 홈페이지</u> <u>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u>제5조(개관 및 휴관) ①</u> <u>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u> <u>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u> <u>관하는 것을 원칙으로</u> <u>한다.</u></p> <p><u>1. 구청장이 시설별 운</u> <u>영 여건 등을 고려하</u> <u>여 정한 정기 휴관일</u></p> <p><u>2. 「공휴일에 관한 법</u> <u>률」에 따른 공휴일.</u> <u>다만, 어린이날은 제</u> <u>외한다.</u></p> <p><u>3. 「근로자의 날 제정</u> <u>에 관한 법률」에 따</u> <u>른 근로자의 날</u></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 고, 이 경우 7일 전까 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p>	<p><u>제5조(개관 및 휴관) ①</u> <u>(개정안과 같음)</u></p> <p>② ----- ----- ----- ----- 있 다. ----- ----- ----- -----.</p>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 5.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 5.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제한)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등)”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시설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기 휴관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다만,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이용시간 등)”을“(운영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용시간은 10시”를 “운영시간은 9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시간”을 “운영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은 놀이터의”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운영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이용료를”을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로,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표 3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퇴장 시킬”을 “퇴장시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에 대하여”로, “퇴장 시킬”을 “퇴장

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되지”를 “이용이 허가되지”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놀이터의 이용자”를 “이용자”로, “지켜야”를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자의 의무)”를 “(유지관리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구청장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위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탁자 자격 및 선정)”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놀이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을 강남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③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위탁계약)”을“(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수탁계약”을 “위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위탁기간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여 놀이터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호 중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약조건”을 “위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시행규칙)”을“(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중 “사업”을 “관리·운영”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별표 1부터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릉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4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언주로107길 4 (역삼동), 2층	
5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대치1동점	남부순환로391길 25 (대치동), 2층	

[별표 2]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료		비 고
	영유아	보호자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	1,000원	1,000원	·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세곡어린이 실내놀이터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3,000원	-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대치1동점	※ 놀이돌봄서비스 2,000원 별도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감면불가)이 추가되며, 신청아동의 경우 단독 입장 가능하다.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상	비고
<p>공공형 실내 놀이터</p>	<p>전액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1.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12. 어르신(65세 이상) 13.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영유아 10명당 1인)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5.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p>
	<p>50% 감면</p>	<p>20명 이상 단체</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기여하는 것-----.</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5. “유지관리”란 설치된 놀이터에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
음과 같다.

1. 영유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
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
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
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
하 “강남구”라 한다)에 놀이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
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놀이
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
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추석 연휴

-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 1. 구청장이 시설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기 휴관일
-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다만,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9시-----
 --.
- ② ----- 운영시간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 운영시간-----
 -----.
 -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 5.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 2. (생략)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 5. (생략)

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
-----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
-----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표 3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
-- 대하여 -----
퇴장시킬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제한) -----
----- 사람에 대하여 -----
----- 퇴장시킬 -----
-.

1. · 2. (현행과 같음)

3. 이용이 허가되지 -----

4.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신 설>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

<삭 제>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의무) ① 구청장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위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자격 및 선정) ①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2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놀이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을 강남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③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과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중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

① -----
위탁계약-----.

1. ~ 7. (현행과 같음)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위탁기간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

제1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하게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여 놀이터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

--.

1. -----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

2. ----- 위탁계약-----
-
3. ----- 위탁-----

제18조(재정지원) -----
- 관리·운영-----
- 범위-----
-----.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재계약) ① 수탁자가 제13
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
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
약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
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
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
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30%;">명 칭</th> <th style="width: 30%;">위 치</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새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현정로618길 7 (새곡동) 지하1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td> <td>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새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새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30%;">명 칭</th> <th style="width: 30%;">위 치</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새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현정로618길 7 (새곡동) 지하1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td> <td>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td> <td>역삼로107길 4 (역삼동) 2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지1동점</td> <td>남부순환로861길 25 (내지동) 2층</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새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새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4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역삼로107길 4 (역삼동) 2층		5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지1동점	남부순환로861길 25 (내지동) 2층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새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새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새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새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4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역삼로107길 4 (역삼동) 2층																																							
5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지1동점	남부순환로861길 25 (내지동) 2층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이용기준</th> <th style="width: 10%;">이용료 (영유아, 보호자)</th> <th style="width: 7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공공형 실내 놀이터</td> <td>개방 무료입 공휴일 공휴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d>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p>	구 분	이용기준	이용료 (영유아, 보호자)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개방 무료입 공휴일 공휴일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사 실</th> <th colspan="2" style="width: 40%;">이용료</th> <th rowspan="2" style="width: 50%;">비 고</th> </tr> <tr> <th style="width: 15%;">영유아</th> <th style="width: 25%;">보호자</th> </tr> </thead> <tbody> <tr> <td>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d rowspan="3">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td> </tr> <tr> <td>새곡어린이 실내놀이터</td> </tr> <tr> <td>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td> </tr> <tr>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r> <tr>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지1동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 키즈카페서비스 2,000원 별도</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내지1동점 이용시 2,000원(감면불가)이 추가되며, 신청이동의 경우 단독 입장 가능하다.</p>	사 실	이용료		비 고	영유아	보호자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	1,000원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새곡어린이 실내놀이터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3,000원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지1동점	* 키즈카페서비스 2,000원 별도														
구 분	이용기준	이용료 (영유아, 보호자)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개방 무료입 공휴일 공휴일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사 실	이용료		비 고																																						
	영유아	보호자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	1,000원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새곡어린이 실내놀이터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3,000원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지1동점	* 키즈카페서비스 2,000원 별도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상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완전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46조 제3항 및 그 이하 2. 「장애인복지법」 제 46조 제1항 소제목 3. 「장애인복지법」 제 46조 제2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공직자보수예우 및 단체장임금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가유공자예우 및 단체장임금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 46조 제1항 소제목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사실혼관계 인정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사실혼관계 인정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6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5. 「장애인복지법」 제 46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p>완전 감면 가정 14세이하 신체장애 장애인유증</p>
	50% 감면	<p>20명 이상 단체</p>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상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완전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헌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헌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실업유공자예우 및 단체장임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가유공자예우 및 단체장임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사실혼관계 인정에 관한 법률」 제 46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6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사실혼관계 인정에 관한 법률」 제 46조제1항 소제목에 따라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5. 구형장이 넓어 더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완전 감면 가정 14세이하 신체장애 장애인유증</p>
	50% 감면	<p>20명 이상 단체</p>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3
----------	-----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보육지원과

1. 제안이유

어린이 실내 놀이터 설치와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실내 놀이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을 무상 제공할 시 수탁자를 수익계약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유희 공간 발굴 및 운영 주체의 적극적인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실내 놀이터 휴관일을 추가 명시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휴일(어린이날 제외) 및 근로자의 날 등 휴관일을 추가 명시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안 제5조)
- 나. 공간 무상 제공 시 지정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무상사용의 경우 해당 수탁자에 한해 위탁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한시적 경비 보조금 시비 4.6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0. ~ 2025. 7. 10.) 중 특기사항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현행 유지 의견이 있어 반영함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등)”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시설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기 휴관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다만,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이용시간 등)”을“(운영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용시간은 10시”를 “운영시간은 9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시간”을 “운영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은 놀이터의”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운영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이용료를”을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로,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표 3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퇴장 시킬”을 “퇴장시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를 “행위

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퇴장 시킬”을 “퇴장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되지”를 “이용이 허가되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자의 의무)”를 “(유지관리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위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탁자 자격 및 선정)”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놀이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을 강남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③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위탁계약)”을 “(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수탁계약”을 “위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위탁기간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여 놀이터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호 중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약조건”을 “위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시행규칙)”을“(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중 “사업”을 “관리·운영”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별표 1부터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릉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4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언주로107길 4 (역삼동), 2층	
5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대치1동점	남부순환로391길 25 (대치동), 2층	

[별표 2]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료		비 고
	영유아	보호자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	1,000원	1,000원	·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세곡어린이 실내놀이터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3,000원	-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대치1동점	※ 놀이돌봄서비스 2,000원 별도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감면불가)이 추가되며, 신청아동의 경우 단독 입장 가능하다.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상	비고
<p>공공형 실내 놀이터</p>	<p>전액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1.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12. 어르신(65세 이상) 13.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영유아 10명당 1인)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5.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p>
	<p>50% 감면</p>	<p>20명 이상 단체</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기여하는 것-----.</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5. “유지관리”란 설치된 놀이터에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
음과 같다.

1. 영유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
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
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
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
하 “강남구”라 한다)에 놀이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
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놀이
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
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1. 구청장이 시설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기 휴관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다만,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9시-----
--.

② ----- 운영시간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 운영시간-----
-----.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1. ~ 5.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1. · 2. (생략)
-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 4. · 5. (생략)

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
-----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
-----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표 3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
--- 사람에 대하여 -----
퇴장시킬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제한) -----
-----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
하여 -----
----- 퇴장시킬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이용이 허가되지 -----

- 4.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의무) ① 구청장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위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자격 및 선정) ①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 위탁에 필요한 절차,

<삭 제>

<삭 제>

제12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1.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놀이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을 강남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③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

① -----
위탁계약-----.

1. ~ 7. (현행과 같음)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과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중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위탁기간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여 놀이터를 관리·운영해

제1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

--.

1. -----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

2. ----- 위탁계약-----
-
3. ----- 위탁-----

제18조(재정지원) -----
- 관리·운영-----
- 범위-----
-----.

제17조(재계약) ① 수탁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30%;">명 칭</th> <th style="width: 30%;">위 치</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현정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td> <td>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30%;">명 칭</th> <th style="width: 30%;">위 치</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td> <td>현정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td> <td>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td> <td>영동대로107길 4 (역삼동), 2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치1동점</td> <td>남부순환로361길 25 (내치동), 2층</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4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영동대로107길 4 (역삼동), 2층		5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치1동점	남부순환로361길 25 (내치동), 2층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도곡로18길 57 (도곡동) 지하1-2층																																							
2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현정로618길 7 (세곡동) 지하1층																																							
3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영동대로 22 (일원동) 지하1층																																							
4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영동대로107길 4 (역삼동), 2층																																							
5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치1동점	남부순환로361길 25 (내치동), 2층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이용기준</th> <th style="width: 15%;">이용료 (영유아, 보호자)</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공공형 실내 놀이터</td> <td>개방 무료입장 공휴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d>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p>	구 분	이용기준	이용료 (영유아, 보호자)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개방 무료입장 공휴일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시 설</th> <th colspan="2" style="width: 40%;">이용료</th> <th rowspan="2" style="width: 45%;">비 고</th> </tr> <tr> <th style="width: 15%;">영유아</th> <th style="width: 25%;">보호자</th> </tr> </thead> <tbody> <tr> <td>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0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0원</td>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td> </tr> <tr> <td>세곡어린이 실내놀이터</td> </tr> <tr> <td>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td> </tr> <tr>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r> <tr> <td>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치1동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이클러스서비스 2,000원 별도</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노이클러스서비스 이용시 2,000원(감면불가)이 추가되며, 신청이동의 경우 단독 입장 가능하다.</p>	시 설	이용료		비 고	영유아	보호자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	1,000원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세곡어린이 실내놀이터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3,000원	-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치1동점	노이클러스서비스 2,000원 별도															
구 분	이용기준	이용료 (영유아, 보호자)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개방 무료입장 공휴일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시 설	이용료		비 고																																						
	영유아	보호자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	1,000원	1,000원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세곡어린이 실내놀이터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3,000원	-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내치1동점	노이클러스서비스 2,000원 별도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사항	감면율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완전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46조 제3항 및 그 이하 2. 「장애인복지법」 제 46조 제1항제1호 3. 「장애인복지법」 제 46조 제2항 제1호인자 그와 동등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항제1호,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제1호,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공공기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항제1호,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1호의 1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제1호의 2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9.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제1호의 3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사실종형사 상임구 명연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제1호의 4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다중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12. 여고생(5세 이상) 13.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전문 강사(영유아 10명당 2인) 14. 구청장이 동사업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감면	20명 이상 단체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완전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헌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헌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등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공공기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1호의 1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제1호의 2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9.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제1호의 3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사실종형사 상임구 명연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제1호의 4호인 자(이하 "대상자"라 함)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다중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12. 여고생(5세 이상) 13.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전문 강사(영유아 10명당 1인)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5. 구청장이 동사업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감면	20명 이상 단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한시적 경비(7억 미만) : 453,600천원
 - 설치비(시비) : $226.8m^2 \times 2,000$ 천원
- 연평균 비용(3억 미만) : 173,808천원
 - 운영비(시비) : 20,400천원
(월1,700천원 \times 12월)
 - 인건비(시비) : 99,792천원 ※ 최대 지원액 기준
 - (시설장 : 월 1,272천원 \times 12월=15,264천원)
 - (돌봄요원 : 월 3,536천원 \times 12월=42,432천원)
 - (안전관리요원 : 월 3,508천원 \times 12월=42,096천원)
 - 인건비(구비) : 53,616천원
 - (시설장 : 월 2,968천원 \times 12월=35,616천원)
 - (기타비용/인건비 초과분 등 : 약 1,500천원 \times 12월=18,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 경비 7억 미만 또는 연평균 3억원 미만 사업에 해당

4. 작성자

- 보육지원과 행정8급 박소은(02-3423-5855)